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의 인권보장 및 자유의사에 따른 대한민국 송환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88호)

2026. 3.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제안 및 회부	1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검토의견	4
1. 결의안의 발의 배경	4
2. 관계 부처 의견	6
3. 주요 내용 검토	8
※ 참고자료	17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7
2.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18
3.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20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 에게 주어지는 구체적 지원	23

I. 제안 및 회부

가. 제안자 : 박충권의원 등 11인

나. 제안일자 : 2025년 12월 2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12월 3일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 포로로 억류되어 있는 북한군 병사 2명이 공개적으로 밝힌 “대한민국으로 자유귀환하고 싶다”는 의사를 존중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 및 국제법에 근거하여 이들의 생명·자유·인권을 보호하고 즉각적인 송환 절차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제기구(UNHCR, ICRC 등)가 이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하며, 자유를 선택한 북한 출신 병사들이 안전하게 대한민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연대 및 외교적 협력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헌법」 제2조와 제3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북한 주민인 해당 포로 2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보호할 법적 의무를 즉각 이행할 것.
2. 외교부와 통일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공식 외교문서를 발송하여, 이들의 신병을 대한민국으로 인도할 것을 요청하고, 안전한 귀환 경로와 수용 절차를 신속히 협의할 것.
3. 대한민국 국회는 강제송환금지 원칙(Non-refoulement)과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제118조에 근거하여, 이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북한 송환을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에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촉구할 것.
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정부의 송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크라이나 의회, UN 및 EU 인권기구 등과 직접 협의를 추진할 것.
5. 대한민국 국회는 초당적 결의로 정부의 적극적인 인도적 조치를 지지하며, “대한민국은 자유를 선택한 국민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것을 천명한다.

제안이유

2025년 1월 11일,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전선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배치된 북한 인민군 소속 병사 2명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생포되었다.

이들은 이후 공개된 언론 인터뷰와 현지 인권단체 접촉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는다”고 명백히 밝혔다.

2025년 11월 9일, 한나 홉코 전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현직 국회의원 2인 및 국방부 소속 관계자 포함)은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해당 북한군 포로들은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으며, 그들은 명백히 대한민국으로 갈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측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제안에 협력할 의사가 분명하다”고 밝혔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정부에 북한군 포로들의 송환 요청을 공식 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였다.

이 사안은 단순한 외교 사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보호의무, 국제인권법이 규정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그리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실현하는 국가의 책무와 직결된다.

특히, 해당 포로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처형, 고문, 정치범수용소 수감 등 극심한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바, 대한민국 국회가 초당적으로 결의하여 정부의 인도적 조치를 지지하고, 국제사회에 강력한 연대를 요청해야 할 시점이다.

자유를 선택한 북한 청년에게 대한민국은 분명히 응답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헌법과 국제법이 요구하는 국가적 의무이자 책임이며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일이다.

Ⅲ. 검토의견

1. 결의안의 발의 배경

정부 자료 등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2025년 1월 9일 북한군 포로 2명이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 생포된 후, 1월 11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를 최초 공개하며 생포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음.

생포 사실 공개 이후, 1월 24일 정부는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서, 동인들이 한국행 요청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이후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통화, G7 외교장관 회의 등 다양한 계기로 우크라이나 측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¹⁾

국회에서도 2025년 2월 국민의힘 유용원의원이 우크라이나 현지를 방문하여 포로 2명을 직접 면담하고, 동 결의안이 발의되며, 2026년 2월에는 관련 세미나²⁾가 개최되기도 하였음.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의 인권보장 및 자유의사에 따른 대한민국 송환 촉구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전쟁

1) 외교부 한반도정책국 한반도미래정책과 (2025.12.26.)

2)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 절차가 1년 넘게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송환을 앞당기기 위한 법적·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출처: 국회보 2026년 3월호)

과정에서 생포된 북한군 병사 2명이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으로의 귀환 의사를 표명한 사안과 관련됨.

이 결의안은 국제인권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³⁾과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협약」⁴⁾(이하 “제네바협약 제3협약”)에 따른 전쟁포로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북한 송환을 방지하는 한편,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해당 포로의 인권을 보장하고 자유의사에 따른 대한민국 송환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려는 취지로 제안된 것임.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병사 생포 관련 사건 경과>

- ‘25. 1.11. 우크라이나 대통령, SNS를 통해 북한군 2명 생포 공개
- ‘25. 2.19. 조선일보, 포로 북한군 인터뷰 보도
 - 정부,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요청시 모두 수용 입장 발표
- ‘25. 2.23. 국힘 유용원의원, 우크라이나 현지 방문 및 포로 직접 면담
- ‘25. 2.25.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정부, 북한군 포로 송환 추진 희망” 발언
- ‘25. 3. 4. 국힘 유용원의원, 우크라이나 방문 후 북한군 포로 면담 결과 발표
- ‘25. 3.21. 통일부 장관, 우크라이나 대사 면담 “북한군 포로 귀순 협조 요청”
- ‘25. 4.24. 민주평통, 1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68.8% ‘북한군 포로 한국행 송환 입장 공감’
- ‘25.11. 7. 북한군 자유송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위원장 : 태영호 전 국회의원)
- ‘26. 2. 3. 국힘 유용원의원, 국회의원회관에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 개최

(자료: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 자립지원과, 2025.12.26.)

3) [참고자료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참고자료 2]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참조

4) [참고자료 3]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협약) 참조

2. 관계 부처 의견

가. 외교부⁵⁾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동 결의안의 취지에 공감함.

해당 북한군 병사 2명은 국내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제법에 따른 ‘포로’로서 제네바협약 제3협약에 따른 전쟁포로에 해당함.

다만, 결의안 제안이유의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북한군 포로들의 공식 송환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서 이들이 한국행 요청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임.

또한, 주문 제4호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정부의 송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크라이나 의회, UN 및 EU 인권기구 등과 직접 협의를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있으나, 이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외교부 한반도정책국 한반도미래정책과 (2025.12.26.)

송환 추진 현황 등은 포로의 신변 보호와 관련된 민감한 외교 사안으로서 확인이 제한적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우크라이나 측과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가 이미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앞으로도 인도주의 원칙 및 국제법에 따라 북한군 포로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

나. 통일부⁶⁾

북한군 포로 처리 문제는 국제법 검토는 물론 관계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을 존중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해 나갈 것임.

북한군 포로 신분은 제네바협약 및 국제법에 따라 먼저 적용되며, 그 이후 한국으로의 송환이 결정되면 북한이탈주민으로 지원받음.

다만, 우크라이나 포로 송환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대외 비공개 등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나치게 이슈화될 경우 송환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6)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 자립지원과 (2025.12.26.)

3. 주요 내용 검토

결의안은 ①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2명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여 보호할 것, ② 외교부와 통일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해당 포로의 대한민국 인도를 요청하고 귀환 절차를 협의할 것, ③ 강제송환금지 원칙과 「1949년 제네바협약 제3협약」에 근거하여 자유의사에 반하는 북한 송환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할 것, ④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정부의 송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국제적 협의를 추진할 것, ⑤ 국회가 정부의 인도적 조치를 지지하고 국민 보호의 헌법정신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총 5개의 주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결의안의 주요내용>

주 문	주요 내용
안 제1호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2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보호할 법적 의무를 즉각 이행할 것
안 제2호	외교부와 통일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공식 외교문서를 통해 해당 포로의 대한민국 인도를 요청하고 안전한 귀환 경로 및 수용 절차를 신속히 협의할 것
안 제3호	강제송환금지 원칙과 「1949년 제네바협약 제3협약」 제118조에 근거하여 자유의사에 반하는 북한 송환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할 것
안 제4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정부의 송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우크라이나 의회 및 국제기구와의 직접 협의를 추진할 것
안 제5호	국회가 초당적 결의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인도적 조치를 지지하고 자유를 선택한 국민을 보호한다는 헌법정신을 실천할 것

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의 법적 지위 및 국내법상 보호의무 (안 제1호 및 제2호)

1.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헌법」 제2조와 제3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북한 주민인 해당 포로 2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보호할 법적 의무를 즉각 이행할 것.
2. 외교부와 통일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공식 외교문서를 발송하여, 이들의 신병을 대한민국으로 인도할 것을 요청하고, 안전한 귀환 경로와 수용 절차를 신속히 협의할 것.

동 결의안은 주문 제1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여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제2호에서 이들의 대한민국 인도를 위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바, 이에 앞서 북한군 포로의 법적 지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헌법 제2조 및 제3조⁷⁾에 따르면 북한 지역 주민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북한군 병사 역시 헌법상 국민으로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해당 포로가 대한민국으로의 입국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⁸⁾

7) 「대한민국헌법」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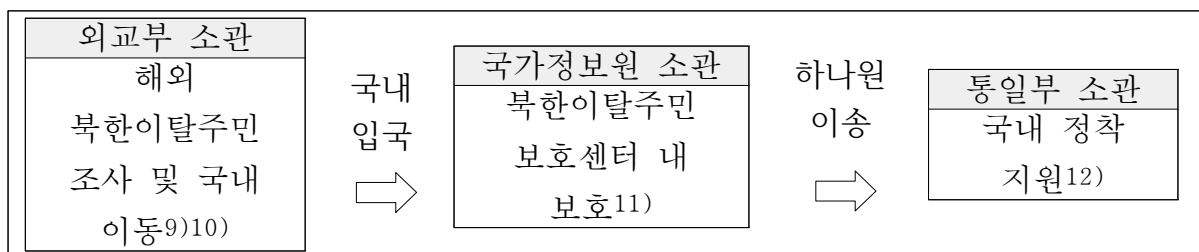
에 따른 국내법상 보호 절차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임.

주문 제2호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향후 포로 2명에 대한 국내 송환 절차 및 노력(외교문서 발송, 신병 인도 요청 등)을 언급하고 있음.

이와 같은 헌법 해석과 관련 법체계를 고려한다면, 북한군 포로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려는 동 결의안의 취지는 헌법상 국민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송환 시 절차 및 업무분장에 따라 외교문서 발송 및 국내이동은 외교부 소관임을 감안하여 ‘통일부의 외교문서 발송’ 관련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송환시 절차 및 업무분장＞



(자료: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 자립지원과, 2025.12.26.)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보호신청 등)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0) 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국내 입국에 있어 국가정보원장의 관할에도 속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보호결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나. 자유의사 존중 및 국제법상 전쟁포로 보호 원칙(안 제3호)

3. 대한민국 국회는 강제송환금지 원칙(Non-refoulement)과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제118조에 근거하여, 이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북한 송환을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에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촉구할 것.

결의안 주문 제3호는 강제송환금지 원칙과 제네바협약 제3협약 제118조¹³⁾을 근거로,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북한 송환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하고 있음.

국제인권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non-refoulement)은 개인이 고문, 처형 등 중대한 인권침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폭넓게 확립되어 있으며, 국제무력분쟁 상황에서도 인도적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음. 또한 제네바협약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해당 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보호신청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정한다.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보호신청 등)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기 위한 시설(이하 “임시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2) [참고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북한이탈주민에게 주어지는 구체적 지원

13) **제네바협약 제3협약 제118조**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 적대행위의 종료를 위하여 충돌 당사국간에 체결된 협정에 상기 취지의 규정이 없거나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억류국은 전항에 정하는 원칙에 따라 지체 없이 송환 계획을 작성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전항의 어느 경우여라도 채택된 조치는 포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포로 송환의 비용은 여하한 경우에도 억류국과 포로 소속 국에 공평히 할당하여야 한다. 이 할당은 다음 기초에 따라 행하여 져야 한다.

가. 양국이 인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포로 소속 국은 억류국 국경으로부터의 송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양국이 인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억류국은 자국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또는 포로 소속국 영토에 가장 가까운 자국의 승선항에 이르기까지의 포로 수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관계국은 기타의 송환비용을 공평히 할당하기 위하여 서로 협정하여야 한다. 이 협정 체결은 여하한 경우에도 포로의 송환을 지연시키는 이유로 하지 못한다.

제3협약은 전쟁포로의 인도적 처우와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포로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장을 핵심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법적 원칙을 전제로,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그 의사에 반하는 송환을 방지해야 한다는 동 결의안의 취지는 국제인권 규범과 전쟁포로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임.

또한, 해당 포로 2명의 경우 국외에서는 국제법에 따른 ‘포로’의 지위가, 국내에서는 국내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

<포로 2명의 국내법·국제법에 따른 지위>

국내법: 북한이탈주민	국제법: 포로
「대한민국 헌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우리 국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상임	제네바 제3협약에 따라, 전쟁포로는 적대행위 종료 후 지체없이 석방·송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ICRC 주석서 등에 따르면 개별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불송환 또는 제3국으로 송환한 국가 실행도 존재함 ¹⁴⁾

(자료: 외교부 한반도정책국 한반도미래정책과, 2025.12.26.)

이에 국내법에 따른 지위를 언급한 주문 제1호 외에, 국제법에 따른 지위를 별도로 언급하여 제법에 따른 원칙을 적용받도록 한 주문 제3호는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14) 다만, 과거 북한군 포로의 송환 또는 주요국 수용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음 (출처: 외교부 한반도정책국 한반도미래정책과, 2025.12.26.)

다. 국회의 역할(안 제4호)

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정부의 송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크라이나 의회, UN 및 EU 인권기구 등과 직접 협의를 추진할 것.

동 결의안은 주문 제4호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송환 추진 현황 점검 및 대표단 파견, 국제적 협의 추진을 규정하고 있음.

외교통일위원회는 「국회법」 15)에 따라 외교부와 통일부를 그 소관으로 하며,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16)에 따르면 특정한 현안 및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해외방문은 의회외교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 송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은 의회외교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직접적으로 외교적인 실무 협의를 추진하는 것은 외교부의 사무에 해당¹⁷⁾하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를 진행하는 것은 상임위원

15)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7. 외교통일위원회

가.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16)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회외교활동의 범위) 의회외교활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1. 방문외교

마. 특정한 현안과 관련된 외국방문

4. 「국회법」 제35조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상호교류 및 자료조사 등을 위한 해외시찰

17) 「정부조직법」 제33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회의 직무¹⁸⁾와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2025년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당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던 유용원 의원이 우크라이나를 방문으로 하여 포로 2명을 만난 바 있으나, 이는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이 아니었던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8) 「국회법」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라. 결의안의 대내외적 의미(안 제5호)

5. 대한민국 국회는 초당적 결의로 정부의 적극적인 인도적 조치를 지지하며, “대한민국은 자유를 선택한 국민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헌법정신을 실천할 것을 천명한다.

동 결의안은 주문 제5호에서 국회가 초당적 결의를 통해 정부의 인도적 조치를 지지하고 헌법정신을 천명하도록 하고 있음.

주문 제5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헌법정신”은 헌법 제2조 및 제3조19)에 따른 “우리 국민”인 북한군 포로 2명이, 헌법 전문과 제4조20)에 따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선택한 것에 대하여, 헌법 제10조21)에 따른 기본권 보장 의무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임.

국회의 결의는 정책 방향에 대한 정치적·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

19) 「대한민국헌법」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20)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와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2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에서, 북한군 포로의 인권 보호와 자유의사 존중 원칙을 국회 차원에서 천명하고, 정부의 인도적 노력을 지지하려는 동 결의안의 취지는 국회의 책무와 기능에 비추어 의의가 있음.

다만, 북한군 포로 송환은 국제적 협상과 외교·안보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민감한 사안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이행 방식과 범위에 대해서는 국제적 여건과 외교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266

참고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체약국은,
국제연합헌장과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세계인권선언이, 인간은 차별없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음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수차에 걸쳐 난민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또한 난민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의 가능한 한 광범위한 행사를 보장하려고 노력하였음을 고려하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종전의 국제협정들을 개정하고 통합하고, 또한 그러한 문서의 적용범위와 그러한 문서에서 정하여진 보호를 새로운 협정에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며,
난민에 대한 비호의 부여가 특정 국가에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국제적 범위와 성격을 가진다고 국제연합이 인정하는 문제에 관한 만족할 만한 해결은 국제협력이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며,
모든 국가가 난민문제의 사회적, 인도적 성격을 인식하고, 이 문제가 국가간의 긴장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하며,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이 난민의 보호에 관하여 정하는 국제협약의 적용을 감독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의하고, 또한 각국과 국제 연합 난민고등판무관과의 협력에 의하여 난민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의 효과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임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5장 행정적 조치

제32조 추 방

제33조 추방 또는 송환의 금지

1.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체약국에 있는 난민으로서 그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국가 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된 자는 이 규정의 이익을 요구하지 못한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용 일부 발췌

참고 2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천명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향유하는 평등하며 불가양한 권리를 인정하는 데서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이룩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국제연합헌장 특히 제55조에 따라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보편적으로 존중하고 이의 준수를 촉진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고,
어느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5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유의하며,
1975년 12월 9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만인의 보호에 관한 선언에 유의하고,
세계적으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실효적이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이 조는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거나 포함하게 될 국제문서나 국내입법을 해하지 아니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기나라 관할하의 영토내에서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입법·행정·사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2. 전쟁상태, 전쟁의 위협, 국내의 정치불안정 또는 그 밖의 사회적 긴급상황 등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3. 상관 또는 당국의 명령은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제3조 1.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와 같이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당국은 가능한 경우 관련국가에서 현저하며 극악한 또는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존재하여 왔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사항을 고려한다.

제4조 1. 당사국은 모든 고문행위가 자기나라의 형법에 따라 범죄가 되도록 보장하며, 고문 미수, 고문 공모 또는 가담에 해당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다룬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용 일부 발췌

참고 3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협약) {Geneva Convention Relating to the Treatment of the Prisoners of War of August 12, 1949}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29년 7월 12일자의 제네바 협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1949년 4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한 외교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정부의 아래에 서명한 전권위원은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제4편 포로 신분의 종류

제1부 직접 송환 및 중립국에서의 수용

제109조 본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충돌 당사국은 중상 및 중병의 포로를 그의 수와 계급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들이 여행에 적합할때까지 치료한 후에 다음조 제1항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적대행위중 관계 중립국의 협력에 의하여 다음조 제2항에서 언급하는 부상자 또는 병자인 포로의 중립국내에서의 수용에 관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충돌 당사국은 장기간 포로의 신분으로 있었던 건강한 포로의 직접 송환 또는 중립국내에서의 억류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 제1항에 의하여 송환의 대상이 되는 부상자, 또는 병자인 포로는 적대 행위의 기간중 그의 의사에 반하여 송환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10조 다음의 자는 직접 송환하여야 한다.

1. 불치의 부상자 또는 병자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기능이 현저히 감퇴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2. 1 년이내에 회복할 가망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진단된 부상자 또는 병자로서 그의 상태가 요양을 필요로 하고 또한 정신적 및 육체적 기능이 현저히 감퇴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3. 회복한 부상자 또는 병자로서 정신적이나 육체적 기능이 현저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감퇴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다음의 자는 중립국내에서 수용할 수 있다.

1. 부상 또는 발병일로 부터 1년이내에 회복된다고 예상되는 부상자나 병자로서 중립국에서 요양하면 일층 확실하고 신속히 회복한다고 인정되는 자.
2. 계속하여 포로의 신분으로 있으면 정신 또는 육체의 건강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진단되는 포로로서 중립국에 수용하면 이 위험이 제거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자. 중립국에 수용된 포로가 송환되기 위하여 충족시킬 조건 및 이들 포로의 지위는 관계국간의 협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립국에 수용되어 있는 포로로서 다음 부류에 속하는 자는 송환하여야 한다

다.

1. 건강 상태가 직접 송환에 관하여 정한 조건에 이를 정도로 악화한 자.
2. 정신적 또는 육체적 기능이 요양 후에도 현저히 악화되어 있는 자. 직접 송환 또는 중립국에서의 수용의 이유로 되는 장애 또는 질병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 협정이 관계 충돌 당사국간에 체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의 종류는 본 협약에 부속된 부상자 또는 병자인 포로의 직접 송환 및 중립국에서의 수용에 관한 표본 협정과 혼성 의료 위원회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1조 억류국, 포로가 속하는 국가 및 그 2국간에 합의된 중립국은 적대 행위가 종료할 때까지 그 중립국 영토내에 포로를 억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의 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2조 적대행위가 시작된 때 부상자 또는 병자인 포로를 진찰하고 그 포로에 관하여 적절한 모든 결정을 취하도록 혼성 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혼성 의료위원회의 임명, 임무 및 활동에 관하여는 본 협약 부속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억류국의 의료당국이 명백히 중병이라고 인정하는 포로는 혼성 의료위원회의 진찰을 거치지 않고 송환할 수 있다.

제113조 억류국의 의료당국이 지정한 포로외에 다음 부류에 속하는 부상자나 병자인 포로는 전조에 정하는 혼성 의료위원의 진찰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동일 국적을 갖는 의사 또는 당해 포로 소속국의 동맹국인 충돌 당사국 국민인 의사로서 수용소내에서 그 임무를 행하는 자가 지정한 부상자 및 병자.
2. 포로 대표가 지정한 부상자 및 병자.
3. 그가 속하는 국가, 또는 포로에게 원조를 주는 단체로서 그 국가가 정당히 승인한 기관에 의하여 지정된 부상자 및 병자. 전기의 3부류의 하나에 속하지 않는 포로도 이들 부류에 속하는 자의 진찰 후에는 혼성 의료위원회의 진찰을 받을 수 있다. 혼성 의료위원회의 진찰을 받는 포로와 동일한 국적을 갖는 의사 및 포로대표에 대하여서는 그 진찰에 입회함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114조 재해를 입은 포로는 고의로 상해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환 또는 중립국에서의 수용에 관하여 본 협약에 규정된 혜택을 향유한다.

제115조 징계벌이 과하여 짐으로서 송환 또는 중립국내에서의 수용에 적합한 자는 처벌의 미료를 이유로 억류하여 두어서는 아니된다. 소추나 유죄판결을 받고 억류된 포로로서 송환 또는 중립국내에서의 수용이 지정된 자는 억류국이 동의한 때에는 사법 절차 또는 형의 만료전에 송환 또는 중립국 내에서의 수용의 혜택을 향유한다. 충돌 당사국은 사법 절차 또는 형 만료까지 억류되는 포로의 성명을 상호 통고 하여야 한다.

제116조 포로의 송환 또는 중립국 이송의 비용은 억류국의 국경으로부터는 포로가 속하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7조 송환된 자는 현역 군무에 복무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부 적대행위 종료시의 포로의 석방과 송환

제118조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 적대행위의 종료를 위하여 충돌 당사국간에 체결된 협정에 상기 취지의 규정이 없거나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억류국은 전항에 정하는 원칙에 따라 지체 없이 송환 계획을 작성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전항의 어느 경우에라도 채택된 조치는 포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포로 송환의 비용은 여하한 경우에도 억류국과 포로 소속 국에 공평히 할당하여야 한다. 이 할당은 다음 기초에 따라 행하여 져야 한다.

가. 양국이 인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포로 소속 국은 억류국 국경으로부터의 송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양국이 인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억류국은 자국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또는 포로 소속국 영토에 가장 가까운 자국의 승선향에 이르기 까지의 포로 수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관계국은 기타의 송환비용을 공평히 할당하기 위하여 서로 협정하여야 한다. 이 협정 체결은 여하한 경우에도 포로의 송환을 지연시키는 이유로 하지 못한다.

제119조 송환은 제118조 및 다음항 이하의 규정을 고려하여 포로의 이동에 대하여 본 협약 제46조로부터 제48조까지 정한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송환에 제하여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포로로부터 압수한 유가물 및 억류국의 통화로 교환하지 않은 외국 통화는 포로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송환에 있어서 포로에게 반환하지 않는 유가물 및 외국 통화는 제122조에 따라 설치되는 포로정보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포로는 그 개인 용품과 수령한 통신 및 소포를 휴대함이 허락되어야 한다. 이들 물품의 중량은 송환조건에 의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 포로가 휴대할 수 있는 적당한 중량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각 포로는 여하한 경우에도 적어도 25키로그램의 물품을 휴대할 수 있어야 한다. 송환된 포로의 기타 개인 용품은 억류국이 보관하여야 한다. 이들 개인 용품은 억류국이 포로의 소속국가와 수송조건 및 수송비용의 지불을 정하는 협정을 체결하면 곧 포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소추가 진행중인 포로는 그러한 소추가 종료될 때까지 그리고 필요하면 형의 종료시까지 억류할 수 있다. 이것은 위반행위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포로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충돌 당사국은 소추 종료시까지 또는 형의 종료시까지 억류되는 포로의 성명을 상호 통고하여야 한다. 충돌 당사국간의 협정으로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분산된 포로를 수색하고 또한 가급적 속히 포로를 송환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용 일부 발췌

참고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에게 주어지는 구체적 지원

구 분	항 목	내 용
정착금	기본금	▶ 1인세대 1,500만원, 2인세대 2,400만원, 3인세대 3,150만원, 4인세대 3,900만원, 5인세대 4,650만원, 6인세대 5,400만원, 7인세대 이상 6,150만원
	지방거주 장려금	▶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 고령가산금(만 60세 이상인 자): 800만원 ▶ 장애가산금: 1,540만원(중증), 360만원(경증) ▶ 장기치료가산금(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1개월 80만원(최대 9개월)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보호결정 당시 13세 미만 아동): 세대당 400만원 ▶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 만 16세 미만 아동 1인당 450만원 ▶ ‘무연고청소년가산금’(월 20만원, 18세~24세)
주거	주택알선	▶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연계하여 임대주택 알선
	주거지원금	▶ 1인 세대 1,600만원, 2인~4인 세대 2,000만원, 5인 이상 세대 2,300만원
취업	취업장려금	▶ 3년간 근무시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새출발장려금	▶ 거주지 보호기간 경과 후 1년 6개월간 근무시 최대 600만원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 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최대 4년 2,400만원 지원) - 적립 목적: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 등 - 지원 기간: 2년(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최대 4년) - 약정 금액: 소득의 30% 범위 내, 월 최대 50만원
	기타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영농정착, 창업지원, 취업바우처 등
사회 보장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최초 5년간 특례규정(가구원 산정 및 소득인정액 기준 등) 적용
	의료보호	▶ 의료급여 1종(근로무능력), 2종 자격 의료혜택
	연금특례	▶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 시 국민연금 가입 특례 규정 적용
교육	특례 편·입학	▶ 대학진학 희망 시 정원 외 특례입학(제3국 출생자녀 정원내 특례입학)
	학비지원	▶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 사립대 50% 보조 (탈북민 자녀 포함)
상담	-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지원

※ 출처: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 자립지원과, 2025.12.26.